한국체육대학교생활관규정

제정 2003. 10. 7. (규칙 제408호) 개정 2012. 3.28. (규칙 제596호) 개정 2014. 1.28. (규칙 제645호)

제 1 장 총 칙

- 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생활관 입사자의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활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(적용범위) 생활관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해진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.
- 제 3 조(조직) ①생활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관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하며 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 - ②생활관장 밑에 사감과 일반직원을 두어 학생지도 및 행정을 담당하도록 한다.

제 2 장 생활관운영위원회

- 제 4 조(생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생활관 생활, 입·퇴사, 경기전 식사(특별식)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를 둔다.
 - ②위원회는 생활관장, 교학처장, 사무국장, 훈련처장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생활관장이 된다.
 -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4.01.28>
 - ④위원회의 위원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 - ⑤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빠른 시일내에 보궐하되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-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관 소속공무원중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.
 - ⑦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며,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.
- 제 5 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 - ①생활관운영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 - ②생활관 제반내규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
 - ③생활관 입사자(이하"입사자"라 한다) 호실배정 및 활동에 관한 사항
 - ④입사자 식사제공 등 학생식당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
 - ⑤입사자 입・퇴사 및 상・벌에 관한 사항
 - ⑥기타 위원장이 상정한 사항
- **제** 6 조(회의소집)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,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제 7 조(의결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가·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3 장 생활관 생활

제 1 절 생활관 이용

- **제 8 조**(생활관 이용) 생활관은 개학기간 동안 개관하며 그 시설이용은 입사자에 한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관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입사자가 아닌 자에게도 시설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.
- **제 9 조**(입사자 활동 및 생활수칙) ①입사자의 활동은 명랑한 생활관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교양을 함양하는데 있으며,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허용된다.
 - ②입사자는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생활관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하여는 평가점수제를 적용하다.
 - ③평가점수제는 감점과 가점으로 구분하며, 점수 및 내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.

제 2 절 생활관 수칙

- 제10조(호실배정) ①입사자의 호실은 학년별, 종목별, 층별 연1회 이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수시 또는 임시 배정해야 할 경우는 생활관장이 정한다.
 - ②배정된 호실은 입사자간의 동의 등에 의하여 임의로 바꾸거나 호실내의 시설 및 비품을 변경할 수 없다.
 - ③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일일생활) 입사자의 일일생활은 아래와 같으며, 계절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4.01.28>

일 과	시 간	비 고
기 상 점 호 조조훈련 조 전강의 중 작 식 오후강의 석 식 실내정 호 점 호 소등 및 취침	06:10 06:20 - 06:40 06:40 - 07:30 07:30 - 08:30 09:00 - 12:20 - 13:30 14:30 - 17:20 18:00 - 19:00 19:00 - 20:30 21:30 23:00	방학중 중식은 12:00-13:00

제12조(식사제공) ①입사자에게는 학생식당에서의 식사를 제공한다.

②학생식당 식사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.

- 제13조(식당이용 준수) 입사자는 다음 각호의 식당이용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지정된 식사시간을 지킨다.
 - 2. 식당 출입시는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식사예절을 갖춘다.
 - 3. 식사 및 식당물품을 식당 밖으로 운반하여서는 안된다.
 - 4. 취사장내 출입을 금지한다. <개정 2014.01.28>

제14조(금지행위) 입사자는 생활관내에서 별표 1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제15조(면회) 입사자의 면회는 필요시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4.01.28>

제16조(외부인 출입금지) 입사자는 생활관내에 외부인을 출입시킬 수 없다.

다만, 행사(졸업식, 입학식)에는 사감의 허락을 받아 출입시킬 수 있다. <개정 2014.01.28>

- 제17조(외출·외박) ①정기외출·외박은 각부 주장이 대상인원을 조사하여 매주 수요일 일석점호시까지 외출외 박 및 잔류자 명부를 생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자유외출을 제외한 주중의 외출·외박은 지도교수의 허락을 얻은 후, 외출·외박증을 생활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18조(화기단속 및 청소) 입사자는 각 호실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.
- 제19조(세탁) 입사자는 세탁실을 이용하여 세탁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건조하여야 한다.
- 제20조(학생자치운영회) ①입사자로 구성된 학생자치운영회를 둘 수 있다.
 - ②학생자치운영회는 사감의 학생지도활동을 보조하게 하며,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4 장 입・퇴사 등

제21조(입사 등록) 입사자는 소정의 입사 서약서와 학생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입사 등록을 하여야 한다. 제22조(입사자격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할 수 없다.

- 1. 한국체육대학교특기자관리규정에 의거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자
- 2. 한국체육대학교학생지원규정 제16조에 해당하는 자
- 3. 법정 전염병 및 보균자
- 4. 유행성 안질 등 생활관 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
제23조(퇴사조치)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사조치한다.

- 1.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(징계기간동안 퇴사)
- 2. 생활관규정에 의한 퇴사에 해당하는 자
- 3. 질병치료 또는 외부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
- 4. 생활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자.
-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의 경·중에 따라 최저 30일에서 최고 365일 이상 퇴사조치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01.28>

제 5 장 경기전 식사(특별식)

- 제24조(경기전 식사) 대회출전을 앞두고 선수들의 영양 및 체중관리,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전 식사(이하 "특별식"이라 한다.)를 제공할 수 있다.
- 제25조(대상 및 기간) ①특별식은 국가대표 선발전 또는 동등 이상의 대회에 한하며, 인원은 출전하는 최소의 인원으로 제한한다.
 - ②특별식은 대회출전 2주일 이내에 한하여 제공한다. 다만, 부득이 2주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4주일을 초과 하여 제공할 수 없다.
- 제26조(특별식 식단) 특별식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며, 식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체력증강식 : 장거리 운동(도로사이클, 중장거리, 역도 등) <개정 2014.01.28>
 - 2. 체중감량식 : 체급경기(복싱, 레슬링, 유도, 태권도, 역도 등)
- 제27조(특별식 신청)특별식은 각 부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생활관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14.01.28> 제28조(기타사항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부 칙 (2003. 10. 7. 제408호)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3. 7. 1 부터 적용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 종전의 한국체육대학교체육특기자관리규정(2001. 9. 1. 규 칙 제347호)에 의 거 시행한 생활관 생활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 로 본다.
- ③(다른 규정의 변경) 한국체육대학교체육특기자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, 제5장제2절(제23조 내지 제28조)을 삭제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학칙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제2항에 의거 본교의 육성종목 지정 및 출전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부 칙 (2014. 1.28. 제645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위반 내용별 점수 및 벌칙

위 반 내 용	감점	벌 칙	비고
물리적행위(폭력, 얼차려 등)음주, 흡연절도, 도박	50	○한국체육대학교학생지원규정 제16호에 의한 징계 • 제적	교학처에 징계요청
 ○ 집단의사표시 행동 (불온유인물 전시 및 배포) ○ 고의적인 공공기물 파손 ○ 화재유발 및 화재유발 물품사용 (버너, 전기난로, 전기장판, 전기히터, 전기핫팩 등) ○ 교직원에 대한 불손한 언행태도 	30	세숙무기정학유기정학근신	
○ 금지된 물품소지・술, 담배, 도박용품, 화기유발 물품 등○ 무단미귀 및 무단이탈○ 허위보고	15	(공통부문) ○ 5점: 반성문 제출 및 외출외박금지 2주 ○10점: 외출외박금지 3주	
○ 소등 불이행 ○ 소란 및 소음행위 등 ○ 호실내 건조 ○ 입사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○ 외부인에게 학생식당 이용 ○ 청소 및 정리정돈 불량 ○ 학생자치회 직무방해	5	○15점: 외출외박금지 4주 ○20점: 외출외박금지 6주 ○25점: 외출외박금지 8주 ○30점: 최저30일, 최고180 일 퇴사 ※생활관 내·외부 청소 등 봉사활동 7-10일이상	

(별표 2) <개정 2014.01.28>

가점 내용 및 점수

가점내용	점수	적용	선정	비고
 포상규정에 의한 포상을 받은 자 선행한 자 생활관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 우수호실 선정 봉사활동 생활상태가 매우 충실한 자 평상시 호실 정리정돈이 양호한 자 (오전학과 및 오후전문실기 훈련시) 	30 20 10 5 5 5 5	4년간 누가 기록하여 감 점과 상쇄된 점수는 소멸	교학처 수시접수 사감회의 사감회의 사감회의 사감회의 사감회의 (주2회점검)	